

# 09 전라북도 시·군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 II. 전라북도 투자유치보조금 지원기준 지원 근거 :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2021. 04. 09. 개정) 시행규칙(2021. 04. 09. 개정)

### 공통사항

- ① 전북도와 사전 MOU체결 기업
  - ② 3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대규모 투자는 예외) \* 3년 미만 신규 창업법인 : 30억원 이상 투자 시 예외적 가능
  - ③ 10억 초과 투자(단,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1억 초과 투자)
- \* 제외업종: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규칙3조) 택주·약주,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플라스틱, 기와, 석제품,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공해, 폭발 및 화재위험 업종, 기타 심의업종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한도
설립 또는 이전 (본사, 연구소, 공장) (조례7조1항, 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사, 공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li> <li>-(연 구 소) 상시고용 연구인원 5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li> <li>-(집단이전) 상시고용 기업당 5명, 합 1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li> <li>-(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금융기관, 유턴기업) 상시고용 5명 이상, 1억 초과 투자</li> </ul> <p>* 우대지원 : 지역주력산업 기업이 특화지역 입주 시 추가지원(규칙4조)</p> <p>▶ 개별 입주 시 2% / 20개 이상 집단 입주시 5%</p> <p>* 설립된 지 3년 미만 법인 : 도내에 30억원 이상 투자(조례7조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단, I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금융기관, 유턴기업은 1억원 초과 투자액의 10%)</li> </ul>	80억
생산자서비스업 (조례7조1항, 5항, 규칙3조2항~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고용 10명 이상 (단, 투자협약 체결 전에 위원회에서 투자협약을 결정한 기업에 한해 지원)</li> </ul> <p>* 건물 임대시 연간 임대료의 50%(1억 한도), 5년간 지원(규칙3조2항)</p> <p>* 설립된 지 3년 미만 법인 : 도내에 30억 원 이상 투자(조례7조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억 초과 투자액의 5% 내</li> </ul>	10억
국내 기업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flex: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 기존부지 외 투자</li> <li>▶ 상시고용 1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 (단, IT·CT 산업,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유턴기업, 금융기관은 5명 이상, 1억 초과 투자)</li> </ul> </div> <div style="flex: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설) 기존부지 내 투자</li> <li>▶ 상시고용 1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 (단, IT·CT 산업,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유턴기업, 금융기관은 5명 이상)</li> </ul>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flex: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단,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금융기관, 유턴기업은 1억원 초과 투자액의 10%)</li> </ul> </div> <div style="flex: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단, 토지구입비는 제외)</li> </ul>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flex: 1;">80억</div> <div style="flex: 1;">80억</div> </div>
대규모 투자 (신규법인 포함) (조례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li> <li>- 2천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500명 이상</li> <li>- 3천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1,000명 이상</li> </ul> <p>- 근로자 정착금 지원(이주 후 1년 이상 거주자로 공장 가동일로부터 3년 내에 신청)</p> <p>* 공장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투자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p> <p>▶ 진입도로, 전기, 가스, 오·, 차량보강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flex: 1;">100억</div> <div style="flex: 1;">200억</div> <div style="flex: 1;">300억</div> </div>
외국인투자기업 (조례13~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보조금 지원 (13조)</li> <li>- 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14조)</li> <li>-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특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 (16조~19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료(분양가)차액 - 정상가액 50% 내</li> <li>▶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li> <li>▶ 취득세감면/공유재산조례 등 참조</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flex: 1;">예산내 (10년)</div> <div style="flex: 1;">80억</div> <div style="flex: 1;"></div> </div>
국내복귀기업 (조례12조의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산업부 고시)」 제9조에 해당하는 국내복귀 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이전 : 5% 내 (전용단지 10%)</li> <li>▶ 집단화 이전 : 1% 내</li> <li>▶ 첨단업종, 연구소 : 10% 내</li> <li>▶ 대기업 본사 동반 이전 : 30% 내</li> </ul> <p>* 기존보조금에 추가(중복) 지원 (단, 25.12.31까지 한시 적용)</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flex: 1;">50억</div> <div style="flex: 1;">5억</div> <div style="flex: 1;">80억</div> <div style="flex: 1;">300억</div> </div>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한도
관광사업 투자기업 (조례25조, 규칙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억 이상 투자, 상시고용 20명 이상 기업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li> <li>- (대규모) 1,000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200명 이상 (단,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내 2개 이상 사업 시,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 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 재정지원 가능(진입도로, 가스, 오·폐수)</li> <li>- 관광위원회 심의 후 지원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투자비, 투자금액의 10% 내 (단, 기존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li> </ul>	20억
고용 보조금 (조례10조, 규칙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 신규채용 20명 초과 기업(상시고용) (단, 집단화 이전,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기업당 5명 초과 기업 / 연구소 설치·이전 시 채용 연구인원 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거주자, 사업개시일 또는 건축허가일부터 3년 내 신규채용 인원</li> </ul> </li> <li>- (생산자서비스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금액의 10% 내</li> </ul>	100억
교육훈련 보조금 (조례11조, 규칙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투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름</li> <li>- (국내복귀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 후 2년간 추가 지원(5명 초과 최대 100명, 10억 한도) (※ 단, 고용보조금과 고용창출장려금은 중복수급 불가, 선택하여 수급)</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 20명 이상 신규채용 후, 상시고용 위해 교육훈련 실시 기업 (단, 집단화 이전,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기업당 5명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거주자, 사업개시일 또는 건축허가일부터 3년 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1회)</li> </ul> </li> <li>- (생산자서비스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 신규고용 20명 초과 인원 - 100만원 × 6개월 / 1인당</li> <li>▶ 도민 신규고용 20명 초과 인원 - 30만원 × 6개월 / 1인당</li> </ul>	10억 5억
고용계수 적용 보조금산출 (조례9조)	- (외투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름		
사후관리 (조례34·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지원액 = 투자액 적용 + 고용규모 적용 ※ 고용계수 = 종업원수(명)/투자액(억원)</li> <li>▶ 투자액적용 = [(투자액 - 10억원) × 지원비율] × 60/100</li> <li>▶ 고용규모적용 = [(투자액 - 투자액 × (1 - 투자고용계수) - 10억원) × 지원비율] × 40/100</li> </ul>		
공통 참고사항 (조례7·8·12·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촉진지역 투자 시 추가 1%, 동부권지역 투자시 추가 5% 지원 &lt;7조7항&gt;</li> <li>-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lt; 7조4항 &gt;</li> <li>- 보조금의 합은 기업 총투자액의 50% 초과 불가 / 동일 목적의 국가나 도 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lt; 12조 &gt;</li> <li>- (지원특례) 국내에서 3년 이상 기업이 유사·연관업종의 별도법인 신설 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가능 &lt; 30조 &gt;</li> </ul> <p>※ 보조금 신청기한 :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토지매매계약, MOU 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lt;규칙3조5항&gt; - 외투기업 입지보조금은 임대 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lt;규칙9조3항&gt;</p>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절차(도비지원 사업)

